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1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임종득 · 이수진
최수진 · 우재준 · 윤영석
안상훈 · 최보운 · 김형동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간호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,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
이러한 규정 방식은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. 실제로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율은

2024년 말 기준 12%에 불과한 상황으로,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).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보건복지부령”을 “대통령령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) ① ~ ③ (생 략) ④ 간호조무사는 <u>보건복지부령</u>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17조(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대통령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⑤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</u>